

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(PLS)가 202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.



축산물 PLS는 미허가 동물약품 등의 오남용을 막고,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, 2024년 1월 1일부터 소·돼지·닭에 사용되는 동물약품에 우선 시행된 후, 타 축종 및 농약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

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는 소·돼지·닭고기, 우유, 달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동물약품은 현재와 같이 해당기준에 따라 관리되지만, 그렇지 않은 약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(0.01mg/kg)을 적용받게 됩니다.

축산농가에서는 우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동 제도가 시행됨을 인식하시고, 아래의 동물약품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

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10대 수칙

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모든 동물용의약(외)품의 축종별 용량과 용법, 휴약기간*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와 사용내역**을 기록하는 등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10대 수칙을 생활화 합니다.

* 동물약품 투여 후 우유 등에 잔류되는 약물이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데 필요한 기간

** 제품명, 휴약기간, 투여량·투여방법·투여일자, 구매처 등을 기록하고 1년 동안 보관

1.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합니다.
2. 사용설명서에 지정된 가축 또는 빈 축사에만 사용합니다.
3. 사용용량을 반드시 준수합니다.
4. 휴약기간은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준수합니다.
5. 사용방법(투약경로)을 반드시 준수합니다.
6. 성분이 같은 약을 먹이면서 동시에 주사를 하는 등 중복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.
7. 주사부위와 주사침 등을 알맞게 선택합니다.
8. 휴약기간 준수를 위해서는 사료통, 축사, 사료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 휴약기간동안 약제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와 물만 급여합니다.
9.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내역을 철저히 기록·유지합니다.
10. 의문이 있는 경우 진료 담당 수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.